

# 공정위,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

- 소프트웨어분야 등 5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 -

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의 발생요소를 제거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, 소프트웨어개발, 엔지니어링활동, 건설자재 등 4개 분야 및 건설, 자동차, 전자, 조선, 기계, 전기 및 섬유 등 사용중인 7개 분야의 총 11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지난 11월 21일(월) 이미 제·개정되어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건축설계분야 등 4개 분야에 이어 소프트웨어분야 등 5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·개정하였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중에 1차로 건축설계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하고, 건

설, 기계 및 섬유 등 3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총 4개 분야의 관련업계에 사용을 권장한 바 있으며,<sup>1)</sup> 이번에는 2차로 관련단체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하고, 전자, 전자, 조선 및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총 5개 분야의 관련업계에 사용을 권장하였다. 또한 공정위는 남은 건설자재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신규 제정(안)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.

이번에 새로 제·개정된 소프트웨어개발 등 5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소프트웨어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주요 내용

- ▶ 납품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 내에 지급
-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부담
- ▶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 명시
- ▶ 원사업자(원청자)가 수급사업자(하도급자)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부당감액에 해당하는 행위 명시

**<부당감액행위>**

· 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,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
·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
· 원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
- ▶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
-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

1) 건축설계분야 등 10월중에 제·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등은 공정경쟁 제38호(98년 10월호) pp.26~27 참조

.....  
**공정위업무활동**  
 .....

- ▶ 계약해지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이행의 최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지권의 행사를 억제

- ▶ 계약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일방적 자의적 해석을 사전에 방지

**신기분이 표준이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**

- ▶ 납품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 내에 지급
- ▶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
- ▶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

- 원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경영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공간설비, 생산관리 실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자료 요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함

**신자본이 표준이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**

- ▶ 납품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 내에 지급
- ▶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

- ▶ 목적물의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
- ▶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원사업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명시

**중기본이 표준이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**

- ▶ 납품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 내에 지급
- ▶ 목적물을 인수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 명시

- ▶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원사업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명시
- ▶ 원사업자의 수령지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수령지연 방지

**지동시본이 표준이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**

- ▶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물품수령 지연이나 수령거부 금지
  - 수령지연이나 수령거부로 인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배상
- ▶ 납품부품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방지
- ▶ 납품부품이 검사에 합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고, 교부시점을 물품의 인도시점으로 간

- 주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명시
- ▶ 불합격품의 원인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명시
- ▶ 계약해제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이행의 최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·해지권의 행사를 억제